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27호서식] <개정 2023. 3. 28.>

비디오물영업신고(등록)증 재교부신청서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기간 1일

신청인	성명(대표자)	생년월일
	주소	전화번호

상호(법인명) 및 영업소 면적(㎡)	(㎡)
영업소 소재지	전화번호
등록번호(등록일)・ 신고번호(신고일)	

「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비디오물제작업・비디오물배급업의 신고증 또는 비디오물시청제공업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도지사・시장・군수・구청장 귀하

신청인(대표자) 첨부 서류	신고증 또는 등록증(신고증 또는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합니다)	수수료 없음

처리절차

신청서 제출	➔	접수	➔	확인	➔	결재	➔	신고증・등록증 발급
신청인		처리기관: (특별자치도・시・군・구 담당 부서)						

210㎜×297㎜[백상지 80g/㎡]